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1가단51451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

담당변호사 김명진, 유동승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주 문

1.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3. 16. 체결된 근저당권설 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8,0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8,0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
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일부 기각 :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이고,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.

판사 장찬

별지